서 울 특 별 시 마 포 구 의 회 제239회 제1차 정례회(2020. 6. 11.)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0-48

2020. 6. 11. 전문위원 신준호

## 1. 제출경위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구의회사무국)

나. 제 출 일 : 2020. 5. 22.

다. 회 부 일 : 2020. 5. 26.

## 2. 결산현황

#### 가. 세입결산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사고이월금으로 발생하였으며,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은 2,875만4,400원임.

(단위 : 원)

-1 H	전년도	al al el all	-1 세 - 징수	실제	سا کی امال	징수 <del>율</del> (%)	
<u>과목</u>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현액 대비	징수 대비
합 계	28,754,400	28,754,400	28,754,400	28,754,400	-	100.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754,400	28,754,400	28,754,400	28,754,400	-	100.0%	100.0%
보전수입등	28,754,400	28,754,400	28,754,400	28,754,400	-	100.0%	100.0%

#### 나. 세출결산

(단위 : 원)

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3,921,482,000	3,950,236,400	3,553,528,569	5,983,230	390,724,601
선진의회상 정립	1,628,704,000	1,657,458,400	1,488,310,804	5,983,230	163,164,366
의정활동 지원	1,616,704,000	1,645,458,400	1,476,310,804	5,983,230	163,164,366
의정활동 홍보	12,000,000	12,000,000	12,000,000		
행정운영경비	2,292,778,000	2,292,778,000	2,065,217,765		227,560,235
인력운영비	2,081,185,000	2,081,185,000	1,941,627,500		139,557,500
기본경비	211,593,000	211,593,000	123,590,265		88,002,735

- 2019회계연도 당초 세출예산액은 39억2,148만2,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2,875만4,400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39억5,023만6,400원임.
- 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90.11%인 35억5,352만8,569원이 집행되었고, 598만 3,2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억9,072만4,601원(9.89%)이 불용되었음.
- 세출에 대한 주요 사업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의정활동 지원'은 예산현액 16억4,545만8,400원 중 14억7,631만804원을 집행했음.
  -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는 예산현액 1,200만원 전액을 집행했음.
  -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2억9,277만8,000 원 중 20억6,521만7,765원을 집행했음.
- 집행잔액 구분
  - 의정활동지원: 1억6,316만4,366원(불용률 9.91%)
  - 인력운영비: 1억3,955만7,500원(불용률 6.70%)
  - 기본경비: 8,800만2,735원(불용률 41.59%)

## 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단위 : 원)

-1 17	집행잔액						
과목	계	낙찰차액	지출잔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액		
합계	390,724,601	-	351,124,601	39,600,000	-		
선진의회상 정립	163,164,366	-	123,564,366	39,600,000	-		
의정활동 지원	163,164,366	-	123,564,366	39,600,000	-		
행정운영경비	227,560,235	-	227,560,235	-	-		
인력운영비	139,557,500	-	139,557,500	-	-		
기본경비	88,002,735	-	88,002,735	-	-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총 세출예산 집행잔액 3억9,072만4,601
 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960만원,
 의정활동 지원 및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과목의 지출잔액으로 3억5,112만
 4,601원이 발생하였음.

### 라. 연도별 예산 집행액 및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61) - 667
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9	3,950,236	3,553,528	390,724	9.89%
2018	3,957,111	3,449,764	478,592	12.09%
2017	3,537,515	3,348,761	507,347	14.34%
2016	3,303,288	3,164,960	188,754	5.71%
2015	3,281,564	3,167,164	138,328	4.22%

※ 2019년 예산액은 2018년도 대비 6,875천원이 감소됨.

## 마. 주요사업 집행잔액 발생 현황

(단위 : 원)

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보수	1,842,522,000	1,713,789,460	128,732,540	6.99%
사무관리비	235,247,000	227,047,662	8,199,338	3.49%
공공운영비	48,502,000	33,819,440	14,682,560	30.27%
국내여비	111,280,000	29,638,400	81,641,600	73.37%
국제화여비	24,000,000	10,987,320	13,012,680	54.2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494,000	41,650,330	8,843,670	17.51%
의원국내여비	13,640,000	3,331,500	10,308,500	75.58%
의원국외여비	61,425,000	30,687,180	30,737,820	50.04%
의정운영공통경비	109,188,000	99,784,379	9,403,621	8.61%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20,893,000	108,531,700	12,361,300	10.22%
의원역량개발비(위탁,자체교육)	7,400,000	1,640,000	5,760,000	77.84%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27,000,000	17,250,000	9,750,000	36.11%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9,288,000	14,893,835	4,394,165	22.78%
성과상여금	97,479,000	87,204,220	10,274,780	10.54%
의원상해부담금	39,600,000		39,600,000	100.00%
도서구입비	4,000,000	3,367,980	632,020	15.80%

## 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단위 : 원)

예산과목			에사해	전용금액		
구분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감액	증액
입법 및 선거관리 전용	입법 및	의정공통업무지 원 및 의장단활 동지원	공공운영비	50,482,000	6,200,000	
	의정공통업무지 원 및 의장단활 동지원	자산및물품 취득비	126,400,000		6,200,000	
	기타	인력운영비	보수	1,858,822,000	3,300,000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	57,990,000		3,300,000

○ 예산 이용ㆍ이체: 해당 없음

○ 예산 전용: 2건, 9,500,000원

-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노후 장비 교체

- 사무국 인사발령에 따른 상위 직급 증가로 직급보조비가 부족하여 동일 단위사업내 보수를 직급보조비로 전용 사용

○ 예산 변경: 1건, 13,000,000원

- 한시임기제 연장 채용으로 인한 변경

	과 목			예산액	변경	금액
구분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পিশ্ৰ	감액	증액
변경	기타	인력운영비	보수	1,855,522,000	13,000,000	
世 <i>る</i>	/ 기다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66,894,000		13,000,000

####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지방회계법」같은법 시행령1) 등에 따라 2019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및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등을 첨 부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승인받고자 제출된 것임.
- 결산검사의견서 개선 및 건의(권고) 사항은 일반회계 15건 , 주차장특별회 계1건으로 총16건이나,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은 없음.

〈표 1. 결산 검사위원 명단〉

검사기간	결산검사위원					
검사기산 	대표위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2020.4. 9.~ 5. 8.	채우진	변인섭 류형수		심상철	최승열	

2019회계연도 결산 중 구의회 사무국은 세입결산은 전년도 사고이월비로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가 이월되어 의장 접견실 시스템 에어컨 설치 사업비

<sup>1)</sup>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 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로 집행하였으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음,

-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9억5,023만6,400원으로 이중 예산현액 대비 약 89.9%인 35억5,352만8,569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 은 3억9.072만4.601원임.
- 최근 5년간 세출 결산액 추이는 본보고서 〈표〉와 같으며, 2019회계연도 예산집행 결과 불용률(9.89%)은 전년대비 2.2%포인트 감소하였음. 그러나, 마포구(일반회계) 평균 불용률(3.95%)²)과 비교하면 구의회사무국의 불용률은 높은 수준이며,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노력이 필요하겠음.
- 구의회 사무국은 2019년 총 2건, 950만원을 예산을 전용하고, 1건, 1,300만원을 변경하였음. 이는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해 그 불가피성은 인정될 수있지만,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음에도 미집행하고 일부 사고 이월된 것은예산의 편성단계에서 충분한 예측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전용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임.
- 2019회계연도 집행잔액 및 불용비율이 높게 나타난 사업 현황은
  공공운영비의 차량유지비용,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자매결연 석경산구 사업추진비, 의원국내・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상해부담금, 국내여비 등으로 매년 같은 통계목에서 불용률이 보이고 있음.
-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과 '국외 선진의회연수' 정책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은 타 기초의회의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한 위축 운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다소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임.

<sup>2) 2019</sup> 회계연도 마포구 결산서

- 최근 전세계적인 전염병인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국내외 다양한 도시와의 교류확장을 통해 의회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초청・방문대상 도시의 사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아울러, 매년 예산 대비 30%이상 미집행된 사업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맞게 각종 의정연수프로그램 참여, 의회 전문강사 초청 세미나 개최 등으로 다각적인 의정활동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